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 정책 지원 AI』 1단계 대회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 정책 지원 AI」 1단계 대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대회에 관심 있는 참가자(팀)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1. 대회목적

- 다수의 연구자 간 경쟁을 통해 창의·도전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연구팀 후속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혁신적 방법론 도출
 - 기존 사업계획서 검토 위주인 정부 R&D 평가방식을 탈피, 실제 연구역량 중심의 R&D 평가·지원 체계로 전환 유도
 - 현재의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로 경진대회를 개최, 다양한 시도를 장려하고 경쟁을 통해 우수한 방법론을 선발

◆ [참고]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개요

- 정부에서 개략적 목표(문제)만을 제시하면 관련 연구자들이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도전하고, 선발된 우수팀에 후속 R&D를 지원하여 기술 고도화



2. 도전 문제

- ◆ **[최종 목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하여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해답과 근거가 포함된 정보를 생성하라”
- **[1단계 문제] : 표, 그래프 등이 포함된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답과 근거를 제시하라**

※ 세부 사항은 [붙임 2] 공고용 문제정의서 참조

3. 근거 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4. 대회 진행방식

- ① **(자율 선행연구)** 대회 참가팀은 참여의향서 접수 후 대회 시까지 세부 문제정의서, 추가 기술문서, 또는 샘플 데이터셋* 등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금 없이 자율적인 선행연구 수행

* 샘플 데이터셋은 학습 데이터셋이 아니며, 비공개로 출제되는 문제 데이터셋의 대표성을 띄는 소량 데이터만 제공 → 참가팀 별 학습 데이터셋 구축 시 참조용

※ 상기 기술문서, 샘플 데이터셋 등은 참가신청이 완료된 팀에 한해 배포하며, 접수마감 후 대회 홈페이지(<https://www.aigrandchallenge.or.kr>)에 공지 예정임

- ② **(온라인 대회)** 대회기간 중 각 참가팀이 개발한 모델을 온라인 대회 플랫폼으로 제출하고, 그 채점 결과로 우수 후보 팀을 가선발
- 대회 종료 후, 후보 팀에 대한 불공정 행위 여부 확인 및 재현성 검증을 통해 대회 결과 점수를 확정하고,
 - 대회 결과 점수에 정성 평가를 일부 반영하여 최종 점수, 순위 확정 및 우수팀 선정 (※ [붙임 2] 공고용 문제정의서, '□ 대회 결과' 설명 참조)
- ③ **(후속연구)** 선정된 우수 연구팀은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추가 기술 확보를 위한 후속연구를 24개월간('23.1월~'24.12월) 지원 예정
- ④ **(후속대회)** 후속연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팀은 후속 단계('23년 및 '24년) 대회에도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함

5. '22년도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22. 8. 11.(목) 11:00 ~ 9. 13.(화), 17:00까지

1 참가접수	2 자율선행 연구	3 대회 개최	4 재현성 검증 및 검토위원회	5 후속연구 협약
대회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세부 문제정의서 등을 토대로 참가팀 별 자율선행연구 실시	'22년도 1단계 대회 개최, 대회 결과 산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확인 및 재현성 검증, 외부 전문가 정성 평가 실시 등	'23년도 후속연구과제 협약체결
8.11(목)~9.13(화)	~ 대회 개최 전	'22.12월 중	'22.12.말~'23.1.초	'23. 1월~

※ 상기 일정은 대회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6. 우수자 특전

- 대회에서 우수 연구팀으로 선발된 팀에게는 후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R&D 과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
- 총 6개의 우수 연구팀을 선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여 및 2년간('23~'24) 10억원/연 내외* 규모로 후속연구 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상금X) 지원 예정
 - * 단, 지원 규모(예산, 과제 수)는 정부 정책 및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우수 팀으로 선정되었으나 후속연구 지원은 포기*하는 팀이 희망할 경우, 후속연구 지원대상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붙임 3] 참여의향서 및 부속서류 내, '후속연구 포기의향서' 제출 필요

** 후속 단계 문제 및 샘플 데이터 제공, 관련 워크숍/설명회 및 대회 참가 자격 등,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 (후속 대회 참가 필수)

7. 참가 방법

가. 대회 참가 자격

- 대회는 국내외*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학·연 컨소시엄 등 참가 가능
- * 외국소재의 개인, 기업, 대학, 연구소,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을 포함하되, 후속연구 지원 시 외국인/기관은 과제에 직접 참여가 불가함
- ※ 상세 내용은 본 공고 '8. 후속연구 관련 안내' 및 [붙임 1] 대회 운영규정 참고

나. 신청방법

- [붙임 3] '참여의향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전산 접수
- * 대회참가 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불필요하며, 후속연구 협약 시 작성

다. 신청 제외대상

- 별도의 제외대상은 없으나,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의향서 및 부속서류를 전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신청요령

- (참가신청 기간) 2022. 8. 11.(목) 11:00 ~ 9. 13.(화) 17:00
- (제출처) 대회 홈페이지* 상단의 [참가신청] 메뉴
- * 대회 홈페이지 URL : <https://www.aigrandchallenge.or.kr>
- (신청 접수방법) 제출처에 참여의향서 및 부속서류를 전산 등록
- * 신청 접수는 전산으로만 진행하며,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 예정
- (유의사항)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전에 접수 요망
-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승인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마감시간 이후엔 수정이 불가하고 대회 참가 신청도 취소되므로, 반드시 마감시간 이내에 완료 요망

마.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구 분	내 용
일시 / 방법	○ 9. 16.(금)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고 전면 온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설명회장 주소 및 온라인 접속 URL은 참여의향서 제출 팀에 한하여 별도 공지
주요내용	○ 대회 참가 시 유의사항, 대회 문제 출제에도 등 공통 안내 사항 ○ 기타 대회 환경, 평가 방법 등의 안내 및 질의응답

8. 후속연구 관련 안내

가. 주요사항

- 본 대회는 '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이며, 최종 확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결과에 따름
- ※ 단, 관련 규정은 협약체결 당시의 규정을 따름
- 본 대회 결과(정성 평가 포함) 외, 다른 우대/감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나. 후속연구 수행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후속연구 수행이 제한됨
 - ※ 외국소재 기관의 대회 참가는 자유롭게 가능하나, 후속연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국내기관이 외국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할 수 있음
 - 기업의 경우는 **협약체결 착수('23.1월 예정) 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 개인(대학(원)생, 일반인 등)이 우수자로 선발된 경우 후속 R&D 수행을 위해서는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체계(대학산학협력단·법인 등) 구성 필수**
 - *** 협약 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를 전문기관에서 확인예정이며, 대회 우수팀이 후속연구를 포기하거나 대회결과 통보 시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후속연구비를 지급할 예정

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음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전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함
-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3.1월 협약 시점에서의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완화 가능

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및 현금 부담 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3.1월 협약시점에서의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현금부담 기준 완화 가능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로 부담하여야 함

마.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하고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다고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 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협약시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도 검증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2월 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 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 (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사.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1월 6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아.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75%→80%까지 지원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인정한 분야
- 산업 위기지역(산업통상자원부)
- 군산시('22.4.5. ~ '23.4.4.)
-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18.5.29. ~ '23.5.28.)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포함

자.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적을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 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 기술료 산정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 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 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및 납부 유예

○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직접 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 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확정

○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 '8. 아.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동 사업의 후속연구 과제는 '일반' 보안등급에 해당함

타.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예시 : 비영리기관)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예시 : 영리기관)

하. 협약 시 제출서류 (※후속연구 지원대상 기관만 협약 시 제출함)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제출처	비 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 (HWP)	IRIS.go.kr (전산 등록)	-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 (PDF)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3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5	사업자등록증(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제출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납부 계획서(기업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7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 1, 2, 3, 4번 서류는 협약 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협약대상기관 개별 안내 예정)				
○ 7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직전 2개 연도('21, '22)의 결산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23년 협약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22) 결산 재무제표만 제출				
※ 직전년도('22)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직전년도 말 추정 재무제표 제출 (분기/반기 X)				

9. 후속연구 유의사항

가. 사전지원제외 대상(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및 [별표 5])

< 다음의 경우는 후속연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

- ※ 모든 영리기관은 대회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나. 기타 유의사항

- 후속연구 지원대상 선정 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하여야 함(사용자 및 기관 회원가입 필요)
- 후속연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가.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후속연구 지원이 취소되는 경우, 후속연구 포기의향서를 제출하더라도 후속 단계 대회 참가 자격 등을 부여하지 않음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실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하여야 함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10. 문의처

구분	문의처
대회 관련 일반문의	☐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 홈페이지 ○ 운영사무국 : 042-531-5987 (09:00 ~ 18:00)* * 단, 점심시간(12:00 ~ 13:00) 및 주말·공휴일 등 제외 ○ 홈페이지 : https://www.aigrandchallenge.or.kr
기술 문의	○ 홈페이지 : https://www.aigrandchallenge.or.kr
절차/규정 관련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 ○ 전화 : 042-612-8664 (10:00 ~ 17:00)* * 단, 점심시간(12:00 ~ 13:00) 및 주말·공휴일 등 제외 ○ 이메일 : deniskim@iitp.kr